

장소 사용규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예약신청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예술공원 등 대형행사를 위한 신청일 경우 행사계획서를 서울숲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 - 행사일시, 목적, 장소, 주최, 주관, 참여인원, 모집방법, 교통,주차,청소,안전대책 등 - 행사참가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 제증명 서류 등 |
| <p>사용신청방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기간 : 장소의 선점을 목적으로 선 접수할 우려가 있는 대형 이벤트 행사 (가족마당)등은 다음과 같이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 * 상반기(1월~6월) 행사는 2월말까지 * 하반기(7월~12월) 행사는 6월 10일까지 예약신청받습니다 • 그 외(일반행사,야외무대,시설사용, 촬영 등) : 수시 예약신청 ※ 단,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. |
| <p>승인절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규모 행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시설사용신청서 제출→장소,기간, 사용승인 제한여부 검토→시설사용 승낙서 발급 • 대규모 행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시설사용신청서 제출→시설사용 심의회 개최→시설사용 승낙서 발급 ※ 대형이벤트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서울숲 『도시공원 시설사용 심의위원회』의 심의를 거쳐 행사규모, 세부행사계획, 안전대책 및 청소계획 등을 심의후 조정, 결정 |
| <p>사용승낙의 취소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용승낙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• 사용승낙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설치,사용하는 경우 • 공원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•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시 또는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• 사용 후의 청소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|
| <p>장소사용시 유의사항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사장 주변 공공시설물 및 잔디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, 훼손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• 행사 종료후에는 쓰레기 자체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행사관련 시설물을 즉시 철거해야 함 •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는 주차하여야 하며, 취사(조리행위 포함) 행위는 및 야영행위는 할 수 없음 •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및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, 부득이 사용시는 한강(수상)방향으로 설치하여 환경보전 소음·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의기준에 의거 소음을 규제하여야 함 |
| <p>장소사용 승인 불허행사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숲의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성격의 행사 (상품 판매행위, 음식물의 조리·시식, 바자회 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) • 공원시설물의 심한 훼손이 예상되는 행사 •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• 야간행사중 인근 주민들의 수면방해가 우려되는 행사 •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(정당행사, 종교집회, 특정단체 집회 등) |
| <p>주의사항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사시에는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여 인근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행사장 내·외는 안전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, 각종 사고시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기 승낙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특히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도없이 승낙조건을 변경하거나 승낙을 취소할 수 있음 • 참여인원이 많아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 간이화장실은 행사 주최자가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함 •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행사승낙후 3일 이내에 납부토록하여 주시고 사용료 미납시 승낙이 자동 취소되며 10일전까지 행사의 자진취소 등으로 장소사용을 못한 경우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• 공원시설사용 승낙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음 • 행사용 시설물 설치를 위한 녹지대 내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시설물 설치시에는 인근 도로에서 인력 등으로 운반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함 • 서울숲관리사무소에서 승낙한 사항 외 타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별도로 이를 득하여야 함 |
| <p>확성기 사용시 생활소음 규제 기준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05:00 ~ 07:00, 18:00 ~ 22:00 에는 60dB 이하 • 07:00 ~ 18:00 에는 65dB 이하 • 22:00 ~ 05:00 에는 60dB 이하 |